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함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2125(2018. 5. 2.)

□ 시행년도 : 2003년도 4월 1일

□ 사업개요

- 개정 시행일 : 2020. 1. 1.
- 사업 수행기관 : 행정시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체
 -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 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 별 신청

- 1/4분기 고용(4월), 2/4분기 고용(7월), 3/4분기 고용(10월)
-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고용 : 12월 10일까지
- 고용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 가능 단, 고용 장애인 중 12월고용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분기 고용 건 신청 시(4월) 소급 신청
- 당해 연도 7월부터 12월까지 신규 고용에 대한 장애인 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지원 단가

구 분	경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원금액	35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 기준일 :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중복지급 관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복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액이 근로자 임금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65만원과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6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 월 임금이 90만원이면 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에서 35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부정수령 시 환수조치)

[서식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		③ 법인등록번호	
④ 소재지				⑤ 사업장수	개
⑥ 전화		⑦ 평균상시근로자수*	명	⑧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	%
⑨ 사업장명	⑩ 소재지				
⑪ 주된 생산품, 사업			⑫ 사업자등록번호		
()년도 ()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산정내역					
월 별	상시근로자수 *	장애인고용의무인 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근로자수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액		총계 (명) (원)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20 년 월 일 (날인 또는 서명)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사업주 </div>					
OO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6.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7. 근로계약서 사본 1부 8.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상시근로자란,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근무한자					수수료
					없 음

